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기 상 관 측 표 준 화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조치기준의 1차란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조치기준의 1차란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u>법 제8조제3항</u> 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 ----- <u>법 제8조의2제3항</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연 락 처	(042) 481 - 7353